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2-47호
2022. 7. 15.(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훈 령(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훈령 제471호) 1

고 시(2)

-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고시(고시 제2022-56호) 9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2-57호) 10

공 고(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4개소) 위탁운영 협약체결 공고(공고 제2022-727호) · 11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22-734호) 12
- 2022 대덕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공고 제2022-740호) 13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728호) 20

행정예고(1)

-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729호) · 32

공 람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2년 7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7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감사실을 말한다.
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청원심의회 기본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구에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청원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기능)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이 되고 주관부서의 장과 관련 행정·법률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팀장 또는 실무자가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청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8조제4항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제8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심의회 개최 요구 등) ① 청원의 처리부서에서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심의회 개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는 제3항에 따른 통보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고,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건	
일시	년 월 일
심의결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원심의회 위원>

구분	성명	심의의견			서명
		찬성 (심의결과 동의)	반대 (심의결과 반대)	비고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요구부서		
청원사항	청원명	
	청원인	(생년월일:)
	청원요지	
요구사유 (요청시기)		
검토의견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	
	※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처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원심의회 귀중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주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원법」이 전부 개정·시행(2021. 12. 23.)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권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청원심의회 기본원칙을 정함(제4조).
- 나. 청원심의회 기능, 구성, 위원 해촉, 운영, 회의 개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부터 제9조까지).
- 다.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및 제11조).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소하천 점용·사용을 아래와 같이 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전도시공사		
	대표자 (성 명)	대전도시공사 사장 (김재혁)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소하천명		덕암천		
점용·사용 개요	위치	덕암동 31, 덕암동 321-5		
	면적	78㎡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2.7.8. ~ 영구		
	목적 및 사유	오수관로 신설		

끝.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오정동 486-12	대전로1019번길 28-15	2022. 7. 15.	건물신축	대전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0,1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대화동 407-2, 408-1, 409-1	대화로132번안길 34-17	2022. 7. 15.	건물신축	대화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3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의 안쪽길
비래동 238-2, -3	우암로492번길 45	2022. 7. 15.	건물신축	우암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4,9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법동 405-1	아리랑로197번길 19	2022. 7. 15.	건물신축	아리랑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9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평촌동 72-3, 산13-57	평촌1길 87	2022. 7. 15.	건물신축	행정구역명(평촌동)을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4개소) 위탁운영 협약체결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4개소)의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협약일: 2022. 7. 8.
2. 위탁기간: 2022. 8. 1. ~ 2027. 7. 31. (5년)
3. 위탁범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및 시설 관리 사무
4. 수탁기관

위탁 시설	위 치	수탁 기관		비 고
		법인(단체)명	대표자	
대화동다함께돌봄센터	동심1길 85, 1층(대화동)	사회복지법인 일진회	구자춘	22년 11월 개소 예정
읍내동다함께돌봄센터	계족로761번길 57, 3층	다예맘푸드스토리 사회적협동조합	박현희	22년 11월 개소 예정
대덕구다함께돌봄센터	동춘당로94번길 11, 5층 (송촌동)	채움사회적협동조합	최경란	
신탄진동다함께돌봄센터	대청로 47, 4층(신탄진동)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유미	22년 11월 개소 예정

끝.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60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신일동 60 번지	10㎡			김○호

2. 기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주택정책과(☎042-608-5152)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2 대덕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주(인·허가포함)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을 위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해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명 : 2022 대덕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2. 공고목적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시행 및 인·허가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명부를 마련하고자 함

3. 참가자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법인등기부상 대전광역시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

4.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2. 7. 15.(금) ~ 8. 8.(월) / 20일 이상

나. 접수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택정책과(공동주택팀, ☎042-608-5173)

다.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및 등록부 각1부
-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각1부
- 3)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기술인력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1부
- 4)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1부

라. 접수방법: 등기우편 및 이메일

- 1) 등기우편: 대전광역시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주택정책과
- 2) E-Mail: majesty@korea.kr

5. 모집공고 일정

구 분	일정(예정)	비 고
수행기관 모집공고	2022. 7. 15.(금)	▶ 대덕구청 홈페이지 공고 ▶ (사)시설물안전진단협회 공고 게시
신청서 접수 마감	2022. 7. 15.(금)~ 8. 8.(월) 18:00	▶ 우편 : 대전광역시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주택정책과 ▶ E-Mail : majesty@korea.kr
접수서류 검토	2022. 8. 8.(월) ~ 8. 10.(수)	▶ 제출서류 적합 및 사실관계 여부 확인
등록명부 공개	2022. 8. 10.(수)	▶ 대덕구청 홈페이지 공고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아래의 기관은 명부작성에서 제외합니다.

- 1)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
- 2) 모집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3) 제출서류가 거짓,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임기는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라. 수행기관 모집에 있어 유효한 신청자가 2개사 이상일 경우 지정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등록명부에 지정(작성)하며, 1개사 이하일 경우 재공고 시행합니다.

마. 추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세부평가기준 등을 별도 공고하여 평가 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게 됩니다.

-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검토 의뢰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사. 모집기간 내 대덕구청에 도달 분만 유효하오니 가급적 미리 제출하여 주시고, 신청서 제출 후 제출결과를 필히 업무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택정책과(공동주택팀, ☎ 042-608-51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	-------------	-------------	------------------

신청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분야	토목분야 [] 건축분야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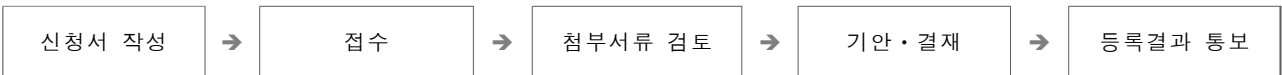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술인 현황

등재 연월일	기술인 수			변경 내용	기록자
	계	특급	고급 이하		

210mm×297mm[백상지(80g/㎡)]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우리 구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덕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상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상징물 사용승인의 거부·취소 및 위반 시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전화: 042-608-6531, FAX: 042-608-3811,
E-mail: nisie@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최정윤(전화 :
042-608-65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나타내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브랜드슬로건: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구가(區歌): 별표 4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상징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각 호의 상징물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상징물 관련 사업)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통해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용역 계약의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 받은 사용목적 등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사용승인의 거부·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상징물을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브랜드슬로건을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해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승인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상징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벌마크(제3조제1호 관련)

		
 주황색은 계족산의 떠오르는 태양, 정다운 대덕 상징  녹색은 푸른 숲, 늘 푸른 대덕 상징  파란색은 금강-대청호의 맑은 물, 희망찬 미래 상징	<p>천(天 - 파란색) 지(地 - 녹색) 인(人 - 주황색)이 삼위일체(三位一體)되어 쾌적한 환경, 인간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여 구민들의 꿈과 소망을 무지개처럼 승화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p>	
 <p>대덕청색 # 0071bc</p>	 <p>대덕주황색 # f58220</p>	 <p>대덕녹색 # 00ac6c</p>

[별표 2]

브랜드슬로건(제3조제2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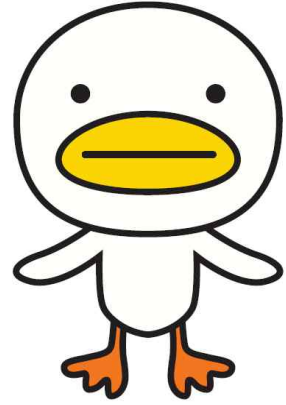
○ 브랜드슬로건: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별표 3]

캐릭터(제3조제3호 관련)

1. 캐릭터 기본형

	
덕구(Deok-gu)	더기더기(Duck2Duck2)

2. 캐릭터 설명

가. 덕구

‘대덕구’라는 명칭 자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직관성을 고려하여 ‘덕구’라고 명명하였으며, 긴 속눈썹에 하트 모양의 코, 홍조를 띤 볼, 단 발머리 같지만 알고 보면 축 늘어진 귀를 가진 오묘하게 매력적인 강아지임.

나. 더기더기

항상 무표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자세히 보면 손과 발이 가만히 있지 않는 출썩 오리(Duck)로 여행, 맛집 탐방, 음악 감상을 즐김.

※ 메인캐릭터인 ‘덕구’와 서브캐릭터인 ‘더기더기’는 대덕구 직원으로 구성된 학습 동아리에서 아이디어·기획·디자인까지 자체 연구 개발한 캐릭터임.

구가(區歌)(제3조제4호 관련)

대덕으로 가!

작사/작곡 유수빈

(전주)



5 Am G Fmaj7 E Am G Fmaj7 E
 천년의역-사를자랑하-는- 대전의터-쫓대감대덕-구- 심심한노-잼동네가아-냐- 반전매력-곳곳에넘치-지-

13 Am G Fmaj7 E Am G Fmaj7 E
 빠지면헤-어나올수없-는- 나만알긴-아까운대덕-구- 산업단지-만있는게아-냐- 문화유적-부터자연속힐링까지!

21 Am G Fmaj7 Em Am G F/D Em
 도심-가-운대전통을느껴봐- 한옥-마-을갈필요없잖아- 길치-공-원가도길을안잃어- 커다-란-아치 다리있잖아-

29 Am G Fmaj7 Em Am G F/D Em
 지친-나-를위해떠나는여행- 사계-절-아름다운두메마을- 맨발-로-황토길을걸어봐- 발가락사이미끌거릴거야우!

37 Am (간주) G F Dm E
 (Interlude)

45 Am G Fmaj7 E Am G Fmaj7 E
 빠지면헤-어나올수없-는- 나만알긴-아까운대덕-구- 구석구석-레트로골목-길- 세상힘찬-친구를모두따라와봐!

53 Am G F E Am G F E
 한 번 오 면 게 - 속 오 고 싶 - 은 대 덕 구 두 번 오 면 헤 - 어 날 수 없 - 는 대 덕 구
 한 번 오 면 게 - 속 오 고 싶 - 은 대 덕 구 두 번 오 면 헤 - 어 날 수 없 - 는 대 덕 구

61 Am G Fmaj7 Em Am G Fmaj7 Em
 즐길-줄-모른다고누가그래- 대전-최-고음악축제있잖아- 독일-맥-주축제부럽지않아- 즐 거 라 대 코 맥주페스티벌우!
 드라-마-촬영지부럽지않아- 주위-에-널린게명소들이야- 메타-세-콰이어있는것도모-르지너는대청호해맞이가봤니우!

69 Am G F E Am G F E
 한 번 오 면 게 - 속 오 고 싶 - 은 대 덕 구 두 번 오 면 헤 - 어 날 수 없 - 는 대 덕 구

※ 음원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명 (대표자명)	
	법인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e-mail)	
사용계획	사용하고자 하는 상징물	
	사용목적	
	사용내용	
	사용기간	
	기타 (사용방법 등)	
구비서류	1. 사용도안 2. 증빙자료 3. 그 밖의 참고자료	
그 밖의 참고사항 ※기업의 업종 및 주생산품 등 간략히 소개		
위와 같이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행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2022년 도시환경조성 간판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하는 신탄진동로 23번길 외 3구간 도로변 접도 건축물에 대한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에 대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2. 행정예고 목적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도시환경조성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신탄진동로 23번길 외 3구간(511m) 도로변 접도 건축물에 대한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자 및 주민의견을 듣고자 함.

3. 행정예고 기간: 2022. 7. 15.(금) ~ 8. 4.(수)(20일간)

4. 예고내용: 신탄진동로 23번길 외 3구간(511m) 도로변 접도 건축물에 대한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5. 예고방법: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구보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주택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붙임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나. 제출기한: 2022. 8. 4일(목)까지

다. 제출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주택정책과 도시경관팀(전화 042-608-5182)

1)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대덕구청 1층 주택정책과 도시경관팀(팩스: 042-608-3843)

2)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1부. 끝.

【붙임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공 고 명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의견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개인/단체)		
	주 소		
장 소(위치)	의견제출 내용		
신탄진동로 2 3번길 외 3 구간(511m)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3 및 영 제28조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붙임 2】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2022년 도시환경조성 간판개선사업”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3, 동법 시행령 제28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옥외광고물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2022년 도시환경조성 간판개선사업 구간을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간판 개선과 지속적 유지 관리를 위해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 제28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정비시범구역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①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떡자골목(신탄진동로 23번길)
- ② 지정구간 세부 도로명 주소 및 위치도: [붙임 지정현황]
 - 신탄진동로 23번길 14, 17, 22, 24, 30, 31, 34, 39, 41, 42, 43, 45, 46, 48, 51, 52
 - 신탄진동로 790번길 25
 - 신탄진동로 796번길 43
 - 신탄진동로 804번길 19, 21, 31, 32
- ③ 적용대상 :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

제4조(일반적인 표시방법)

- ①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 이하로 한다
- ② 광고물 등의 재료 및 형태에 있어 플렉스 등의 유연성 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을 자제하고 업소의 특성과 건축물 및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는 다양한 재료 및 에너지절약형 조명(LED 등으로 광원이 직접 비노출에 한함)의 사용을 권장한다.
- ③ 커튼 월 [Curtain Wall(비내력외벽)]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다만 창틀 또는 구조물을 이용하여 게시틀을 설치하고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④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명칭·도형 등은 그대로 표시할 수 있다.
- ⑤ 간판에는 상호, 브랜드명 또는 이를 상징하는 문자, 도형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⑥ 적색류 또는 흑색류는 광고물의 50% 이내로 사용하며 건축물 및 업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⑦ 업소를 특정 짓고 차별할 수 있도록 엠블렘, 픽토그램 등 사용을 권장한다.
- ⑧ 신고 제외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도 표시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정비시범 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벽면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① 1개의 업소에서 1개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업소의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한 업소의 경우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건물의 외벽 훼손 방지 및 간판 교체가 용이하도록 입체형 간판은 게시틀을 설치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게시틀은 광고물 세로 높이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건물의 외부 미관을 보호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판류형 간판의 설치를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판류형을 설치하거나 인테리어 파사드에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④ 간판의 글자크기는 65cm 이내, 가로크기는 최대 10m 이내 또는 가로폭의 80%,

세로크기는 80cm 이내, 최대 건물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① 벽면이용 간판을 표시하지 못한 업소가 우선하여 설치하며 1개 업소에서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1면의 면적이 0.36㎡이내이고, 두께가 0.2m 이하인 돌출간판으로 의료기관·약국·이용업소·미용업소 표시등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게시틀을 설치하여 연립형으로 건물의 벽면에서 동일한 크기로 위·아래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일관되게 돌출시켜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의 좌·우측면 모서리 중 한쪽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접한 도로에서 건물 주출입구가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이거나 지하 또는 건물 구조상 다른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며,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내로 한다.

제8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① 창문 이용 광고물은 1층에 한하여 건물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성명, 주소, 상표,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 또는 상징적 도안을 표시할 수 있다.
- ② 창문 또는 출입문에 접착성이 있는 비닐, 종이 등의 재질로 안전띠 개념으로 한 줄로 직접 부착하는 형태로 하여야 하며, 문자의 크기는 20cm 이내로 가로 쓰기를 하여야 한다.
- ③ 표시 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서 최대 1㎡이내로 한다.
- ④ 전광류는 사용을 금지한다.

제9조(표시금지 광고물) 옥상간판, 공연간판, 애드벌룬, 입간판, 현수막은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현수막은 지정계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 ① 정비시범구역 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건축주 및 광고주 등은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계약서상에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임을 명시하여 분양계약자 및 세입자가 정비시범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의 특례) 구청장은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광

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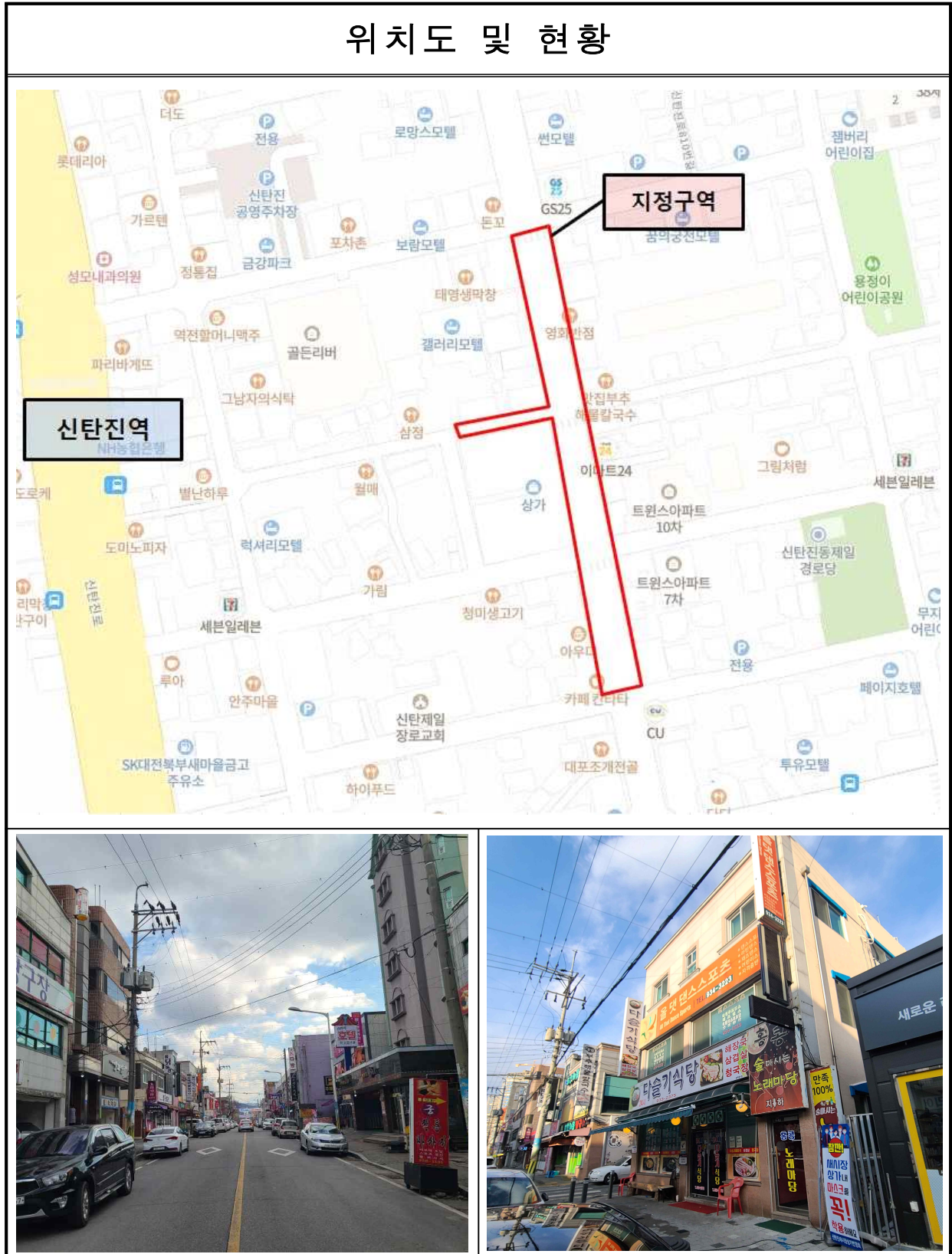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법, 영, 시 조례, 구 조례를 준용한다.

□ 위치도 및 현황

○ 신탄진동로 23번길 외 3개소(신탄진동 먹자골목)



□ 지정구역 상세주소

구분	지정구역(도로명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신탄진동로23번길 14
	신탄진동로23번길 17
	신탄진동로23번길 22
	신탄진동로23번길 24
	신탄진동로23번길 30
	신탄진동로23번길 31
	신탄진동로23번길 34
	신탄진동로23번길 39
	신탄진동로23번길 41
	신탄진동로23번길 42
	신탄진동로23번길 43
	신탄진동로23번길 45
	신탄진동로23번길 46
	신탄진동로23번길 48
	신탄진동로23번길 51
	신탄진동로23번길 52
	신탄진동로790번길 25
	신탄진로796번길 43
	신탄진로804번길 19
	신탄진로804번길 21
신탄진로804번길 31	
신탄진로804번길 32	